

하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하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하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 2. 24.

하동군의회 의장 강대선

1. **조례명:** 하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를 반영하여 조례에 징계대상 위반행위를 구체화하고,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징계의 실효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2024.8.27.)사항을 반영하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2022.5.19.)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2022.6.2.)에 따라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에서 중복·유사한 내용을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징계대상 행위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행위 추가 및 징계기준 보완(안 제9조제1항제7호, 별표 1)
 - 제4조 및 제5조를 위반하는 행위
 - 징계대상 비위유형별 세부 징계기준(별표 1)
- 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에 따라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 등의 가액 범위 현실화 (안 제18조, 별표 2)
- 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성격의 조문 및 관련 서식 삭제
 - 6개 조문 삭제: 사적이해관계의 신고(제10조),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제10조의2),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제10조의3), 가족 채용의 제한(제10조의4),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제17조),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제22조)
 - 5개 서식 삭제: 규정 삭제에 따른 관련 별지 서식 정비(제4호~제7호, 제15호)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하동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방법

- 1) 팩스: 055-880-2939
- 2) 하동군의회 홈페이지(<http://www.hdcl.go.kr>) 열린마당(의회에 바란다)
- 3) e-mail: uu1028@korea.kr

붙임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하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 명: 하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조항)	찬 성 여 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하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원은 하동군(이하 “군”이라한다) 및 다음 각 호의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하동군(이하“군”이라한다)이”를 “군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의원”을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않을 때 또는 의원”으로, “권고할 수 있다”를 “권고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제8조의 제목 “(수의계약체결 제한 등)”을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4조 및 제5조를 위반하는 행위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제10조의3을 삭제한다.

제10조의4를 삭제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징계기준(제9조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품위유지	○ 음주운전	
	- 면허취소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면허정지	경고, 공개사과
	○ 범법행위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금고 미만 확정판결	
	○ 각종 비리 관련 범죄행위 - 비리행위로 인한 벌금 이하 확정판결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 유출	경고, 공개사과
	○ 성폭력, 성희롱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청렴의무	○ 탈세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면탈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금품수수 - 직무 관련 금품 등 수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알선·청탁, 이권개입, 직무 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등 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반
3.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영리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 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경고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겸직신고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경고
	○ 겸직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지방자치법」 제43조제6항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 회피의무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무 위반	경고, 공개사과
	○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6.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 공개 위반 등	공개사과
7. 회의불참	○ 정당한 이유없는 회의 무단 불참(회기당 3회 이상)	경고, 공개사과

[별표 2]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8조제3항제1호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5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3호에서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별표 3]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0조제1항 관련)

1. 사례금 상한액

가.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 40만원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의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소속 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하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1. ~ 6. (생략)

<신설>

② (생략)

제10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의원은 안건심의 등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건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1.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1. ~ 6. (현행과 같음)

7. 제4조 및 제5조를 위반하는 행위

② (현행과 같음)

<삭제>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
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
인 경우

5.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
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
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
·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
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
우

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
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
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
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0 이상인 사업자

나.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
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
0 이상인 사업자

다.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
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
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1천만 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8.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등 지
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
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
단되는 자

9. 최근 2년 이내에 안건심의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②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
피하지 않으면 의회 또는 해당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는 의결로써 그 의원을 안건심
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본회의 또는 해
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
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결의
대상이 된 의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회피, 제3항에 따른 의결·의견 제출 등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0조의2(의장 등의 민간 분야 <삭 제>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의장(의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말하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해야 한다.

제10조의3(직무 관련 조언·자문 <삭 제>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의회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의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의회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의장은 의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원에게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의4(가족 채용 제한) 의원은 의회, 군의 집행기관 및 군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삭 제>

제17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22조(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①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삭 제>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

가중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였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와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이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였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의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안전심의등 직무를 회피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